



투자설명서 변경

(1) 기재 정정 사유

1.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3. FATCA 관련 유의사항 문구 추가
4. 세법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변경

변경내용	변경 전	변경 후
1.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부 5.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사항 (운용현황) -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- 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-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 - 제5부 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	최근현황갱신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p><변경 대상 항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부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	<p><변경 대상 항목></p> <p>(신설)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등</p>
3. FATCA 관련 유의사항 문구 추가	<p><변경 대상 항목></p> <p>[투자결정시 유의사항]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<변경 대상 항목></p> <p>[투자결정시 유의사항]</p> <p>12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 (또는 1인 이상의 미국(법)인이 10%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)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-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3. 이 투자신탁은 (중간 생략) 의미합니다.</p> <p>①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. (이후 생략)</p> <p>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 미국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(FATCA) 및 미국납세의무자 (US Taxpayers)</p>

4. 세법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변경	<p><변경 대상 항목> 제2부 14. 나. 과세 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 15.4%(주민세 포함), <u>일반법인 14%</u> (중간 생략)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%의 세율로 원천징수(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)됩니다.</p>	<p><변경 대상 항목> 제2부 14. 나. 과세 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 15.4%(주민세 포함), <u>일반법인 15.4%(법인세 14%, 법인지방소득세 1.4%)</u> (현행과 같음)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<u>15.4%(법인세 14%, 법인지방소득세 1.4%)</u>의 세율로 원천징수(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)됩니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

(1) 기재 정정 사유

1.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
2. FATCA 관련 유의사항 문구 추가
3. 세법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변경

변경내용	변경 전	변경 후
1.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I. 6.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사항 (운용현황) - I. 7. 투자실적 추이 - II. 1. 수수료 및 보수 - III. 요약 재무제표 	최근현황갱신
2. FATCA 관련 유의사항 문구 추가	<p><변경 대상 항목> [투자결정시 유의사항] <u><신설></u></p>	<p><변경 대상 항목> [투자결정시 유의사항] 12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 (또는 1인 이상의 미국(법)인이 10%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)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-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13. 이 투자신탁은 (중간 생략) 의미합니다. ①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. (이후 생략)</p>
3. 세법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변경	<p><변경 대상 항목> II. 2. 과세 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 15.4%(주민세 포함), <u>일반법인 14%</u> (중간 생략)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%의 세율로 원천징수(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)됩니다.</p>	<p><변경 대상 항목> II. 2. 과세 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 15.4%(주민세 포함), <u>일반법인 15.4%(법인세 14%, 법인지방소득세 1.4%)</u> (현행과 같음)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<u>15.4%(법인세 14%, 법인지방소득세 1.4%)</u>의 세율로 원천징수(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)됩니다.</p>